1. 개정이유

현행 규정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을 두도록 하는 「건설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」과 달리 사무국 설치의 근거 규정이 없어,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실화를 위해 사고 발생 모니터링, 사고조사 계획 수립, 사고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 등을 전담하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무국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발생 모니터링, 사고조 사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사고조사의 내 실화를 도모하고자 함(안 제16조 신설)
- 나.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사유를 규정하여 사고조사의 중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6조의2 신설)
- 다. 현장조사 시 시설물 관리주체 책임자에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 의무를 부여함(안 제22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200호

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"운영위탁기관"이란 시설물안전법 제60조제2항제6호 및 시행령 제4 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앙시설물사고조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.

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.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선정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.
 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) 또는 이해관계인(이하 이 항에서 "당사자"라 한다)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.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- ② 해당 사고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할 수 있고,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3장의 제목 "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"을 "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의 설치"로 한다.

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로 하고, 제21조를 제23조로 하며,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하고,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6조(사무국 설치 및 운영) ① 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,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.

- 1. 위워단 구성 및 관리
- 2. 시설물사고 발생 모니터링
- 3. 개략적인 사고원인, 피해규모 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초기 현장조사
- 4. 시설물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
- 5. 시설물사고의 정보수집,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
- 6. 현장조사, 회의 등 위원회 활동의 지원
- 7.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
- 8. 시설물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
- 9. 시설물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
- 10.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1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

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(안전대책) 시설물 관리주체의 책임자는 시설물사고현장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를 배치하여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27조(종전의 제24조)제2항 중 "위원"을 "위원은"으로 하고, 제24조를

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(조사기한) 현장조사는 조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2개 월 이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며,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.

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중앙시설물사고조사원증

	0 0	
사진	중앙시설물사고조사원증 제 호	
○ 조사명 :		
	20 년 월 일 임명기관장 인	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 정의) 이 규정에서 사	제2조(용어 정의)
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"운영위탁기관"이란 시설물
	안전법 제60조제2항제6호 및
	시행령 제43조제2항제7호에
	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
	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
	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
	<u>기관을 말한다.</u>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・② (생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・② (현
략)	행과 같음)
<u>②</u> ~ <u>④</u> (생 략)	$\underline{3} \sim \underline{5}$ (현행 제 2 항부터 제 4
	항까지와 같음)
<u><신 설></u>	제6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	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의 선
	정 시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	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
	<u>한다.</u>
	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
	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고의
	<u>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</u>
	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

함한다) 또는 이해관계인(이 하 이 항에서 "당사자"라 한 다)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

- 2. 위원이 해당 사고의 당사자 와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사고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(하도급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감정 또는 조사 를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 단체 등이 해당 사고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었던 경우
- 5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고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- ② 해당 사고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제3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 작성

<신 설>

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 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 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3장

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의 설치

제16조(사무국 설치 및 운영) ① 운영위탁기관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,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탁기관이 정할 수 있다.
- 1. 위원단 구성 및 관리
- 2. 시설물사고 발생 모니터링
- 3. 개략적인 사고원인, 피해규모

<u>파악 및 위원회의 설치 필요</u> 성 검토를 위한 초기 현장조 <u>사</u>

- 4. 시설물사고 조사계획 수립 지원
- 5. 시설물사고의 정보수집, 경위 및 원인조사 지원
- 6. 현장조사, 회의 등 위원회 <u>활</u> 동의 지원
- 7. 위원회 운영비용의 지출 및 정산
- 8. 시설물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교육 등 예방활동
- 9. 시설물사고 통계의 작성 및 관리
- 10.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업무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국 직원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.

 제4장 현장조사 및 보고서

 작성

<u>제17조</u> ~ <u>제21조</u> (현행 제16조부 터 제20조까지와 같음)

<신 설>

제16조 ~ 제20조 (생 략)

제22조(안전대책) 시설물 관리주 <신 설> 체의 책임자는 시설물사고현장 조사 진행 중에 작업원 또는 위 원 등 인명의 안전을 우선해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안전전문가 를 배치하여 구조물의 추가적인 붕괴방지나 안전보호대책을 수 립할 수 있다. 제23조 (현행 제21조와 같음) 제21조 (생략) <신 설> 제24조(조사기한) 현장조사는 조 사계획 수립 후 그에 따라 체계 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사고 발생 후 1주일 이내 착수하여 2개월 이내 종료를 원 칙으로 하며,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. 제22조 · 제23조 (생 략) 제25조 · 제26조 (현행 제22조 및 제23조와 같음) 제27조(비밀준수) ① (현행과 같 제24조(비밀준수) ① (생 략) 음) ② 위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② 위원은 -----서약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.